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지금까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기존 내진등급체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서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 위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4)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인증기관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안 제11조의4 제1항 제6호)

국방·군사시설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국방·군사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기준”을 “기준 및 등급”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4(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 -----.
<u>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	<u>(삭제)</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인증 <u>기준</u>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u>기준 및 등급</u> ----- ----- ----- ----- -----.
③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u>인증기관의 장</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u>인증기관의 장</u> ----- ----- ----- -----.
⑤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u>인증기관의 장</u> ----- ----- ----- ----- ----- -----.
⑥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u>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u>	⑥ <u>인증기관의 장</u> ----- ----- ----- ----- ----- (삭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진방재정책과	
연 락 처	044-205-5188